
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(제6조제2항 관련)

수산동식물	학명	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
1. 어 류	가. 개서대	<i>Cynoglossus robustus</i> 26센티미터 이하
	나. 문치가자미	<i>Pleuronectes yokohamae</i> 15센티미터 이하
	다. 참가자미	<i>Pleuronectes herzensteini</i> 12센티미터 이하
	라. 감성돔	<i>Acanthopagrus schlegelii</i> 20센티미터 이하
	마. 돌돔	<i>Oplegnathus fasciatus</i> 24센티미터 이하
	바. 참돔	<i>Pagrus major</i> 24센티미터 이하
	사. 황돔	<i>Dentex tumifrons</i> 15센티미터 이하
	아. 넙치	<i>Paralichthys olivaceus</i> 21센티미터 이하
	자. 농어	<i>Lateolabrax japonicus</i> 30센티미터 이하
	차. 대구	<i>Gadus macrocephalus</i> 30센티미터 이하
	카. 도루묵	<i>Arctoscopus japonicus</i> 11센티미터 이하
	타. 삭제 <2019. 1. 22.>	
	파. 민어	<i>Miichthys miiuy</i> 33센티미터 이하
	하. 방어	<i>Seriola quinqueradiata</i> 30센티미터 이하
	거. 볼락	<i>Sebastes inermis</i> 15센티미터 이하
	너. 붕장어	<i>Conger myriaster</i> 35센티미터 이하
	더. 조피볼락	<i>Sebastes schlegelii</i> 23센티미터 이하
	러. 쥐노래미	<i>Hexagrammos otakii</i> 20센티미터 이하
	머. 황복	<i>Takifugu obscurus</i> 20센티미터 이하
	버. 참홍어	<i>Raja pulchra</i>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
서. 갈치	<i>Trichiurus lepturus</i>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. 다만,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

	어. 고등어	<i>Scomber japonicus</i>	21센티미터 이하. 다만,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저. 참조기	<i>Larimichthys polyactis</i>	15센티미터 이하. 다만,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처. 말쥐치	<i>Thamnaconus modestus</i>	18센티미터 이하
	커. 갯장어	<i>Muraenesox cinereus</i>	40센티미터 이하
	터. 미거지	<i>Liparis ochotensis</i>	40센티미터 이하
2.	가. 꽃게	<i>Portunus trituberculatus</i>	6.4센티미터 이하
	나. 대게	<i>Chionoecetes opilio</i>	9센티미터 이하
	다. 털게	<i>Erimacrus isenbecki</i>	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
	라. 닭새우	<i>Panulirus japonicus</i>	5센티미터 이하
	마. 필닭새우	<i>Linuparus trigonus</i>	10센티미터 이하
3.	가. 백합	<i>Meretrix lusoria</i>	각장 5센티미터 이하
	나. 소라	<i>Batillus cornutus</i>	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·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
	다.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	<i>Sulculus diversicolor</i> <i>Sulculus</i> <i>diversicolor aquatilis</i>	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
	라. 전복류	<i>Haliotis spp.</i>	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.
	마. 기수재첩	<i>Corbicula japonica</i>	각장 1.5센티미터 이하
	바. 키조개	<i>Atrina pectinata</i>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,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
4.	가. 대문어	<i>Octopus dofleini</i>	400그램 이하
	나. 살오징어	<i>Todarodes pacificus</i>	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. 다만, 살오징

		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-	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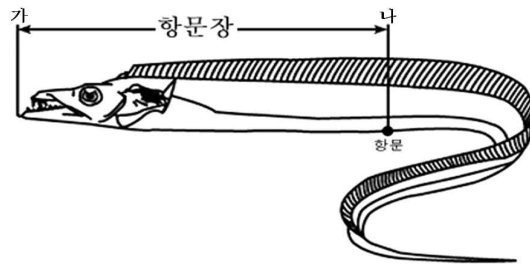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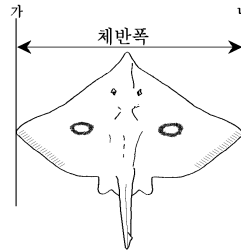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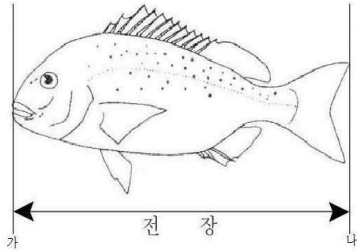
비고

1.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"가"와 "나" 사이의 직선거리를 잴 값으로 한다.
2.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.
 - 가. 어류: 전장(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), 체반폭(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) 또는 항문장(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)
 - 나. 갑각류: 두흉갑장(머리·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)
 - 다. 패류: 각장(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) 또는 각고(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)
 - 라. 성게: 각경(몸체의 지름을 말한다)
 - 마. 오징어류: 외투장(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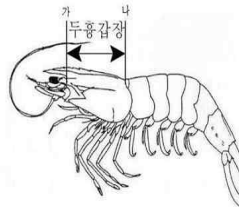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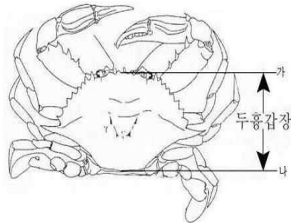
[부도] <개정 2016.2.3.>

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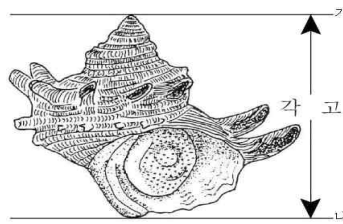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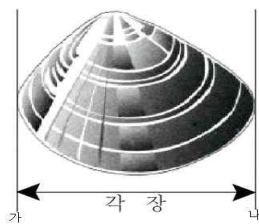
[어 류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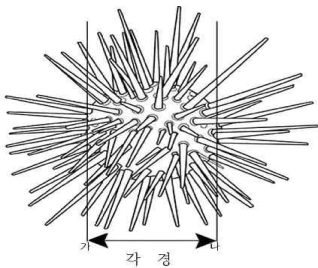
[갑 각 류]



[패 류]



[성 계]



[오 징 어 류]

